

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「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운영 · 사무처리, 사무지원 및 준용 (안 제3조 ~ 제4조)
- 인력 등 지원 및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관계법령

- 관계법령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9. 4. 24. ~ 2019. 4. 28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8일 18:00(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 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성군이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장성군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 · 사무 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장성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 지원 및 준용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「장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